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37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4월 15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4. 4. 15.~2024. 4. 28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오낙균	1974.○.10	0178200274100001732	₩19,116,000	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426번길 ○○
2	주식회사 유니온폴스	110111-4924109	0178230274100001422	₩3,907,500	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27, 원효로우체국 3층
3	(주)다독인더 시티	110111-5998202	0178220274100001950	₩4,447,500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1길 10 (역삼동), 1층
4	주식회사 인터래저	110111-7755733	0178220274100003080	₩4,267,500	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, 5층 (삼성동)
5	주식회사 오앤제이마 케팅유통투 자그룹	110111-7817468	0178230274100001462	₩16,350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4, 605호(신사동 ICT TOWER)
6	주식회사 플러스업컴 퍼니	110111-7881174	0178230274100000752	₩15,990,000	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48번길 105, 602호(중동, 조이러타운)
7	주식회사 엘에스콘텐 츠	121111-0395286	0178220274100003087	₩17,070,000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7번길 43, 유진빌딩 7층(구월동)
8	(주)우리글 프	131111-0538777	0178230274100000691	₩4,177,500	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75 (평창동) 에이동 407호
9	주식회사 비케이	134811-0525975	0178220274100001996	₩4,447,500	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(대연동) 10층 1001-345호
10	전동숙	1954.○.19	0178240274100000106	₩721,000	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3길 ○○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1	조대일	1975.○.08	0178240274100000112	₩3,862,500	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1길 ○○
12	노종구	1973.○.21	0178240274100000120	₩3,862,500	인천광역시 연수구 합박외로50번길 ○○
13	(주)도움이 티에스	110111-3063263	0178240274100000116	₩15,450,000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(가산동) 906~911호
14	안미화	1965.○.10	0178240274100000816	₩2,000,000	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앞골길 ○○
15	김성원	1982.○.23	0178240274100000815	₩3,000,000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평로 ○○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, 11층 ☎ 02-6735-8139, 8141, 8142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